

제 2021-CQ-0007 호



안 전 인 증 서

스왈록아시아(주)

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510번길14 (삼락동)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 및 시행규칙 제110조(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) 제4항(인증서 교부)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 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_____ 품 목 _____

안전모

_____ 형식·모델/용량·등급/인증번호 _____

형식·모델

인 증 번 호

TOGU-JDCB

21-AV2CQ-0007

용량·등급

ABE(일반보안면 겸용)

_____ 인 증 기 준 _____

보호구 안전인증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35호)

_____ 인 증 조 건 _____

스왈록아시아(주),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510번길14 (삼락동)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.

2021년 03월 23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이

